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청약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로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여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회사가 사전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은 반드시 직접 청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판매자(모집인)에게 구두상 알린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이란, 합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계약의 성립**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 (보험 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 2회이후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이후 최초로 다가오는 영업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인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만 보험계약상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무배당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단체보험계약자, 주권상장법인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의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신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취소** 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인출 및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사망보장이 있는 경우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생존연금이 지급개시 된 이후에는 계약이종에 한하여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약관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이익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표 참조)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로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제외)
-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보험의 보장부분에 적용한 이율은 연복리 2.5%입니다. ※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적용위험율,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이 보험상품의 상품요약서 (당사 홈페이지 참조)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적용합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할 수 있습니다. (최저보증이율 : 가입 후 5년내에 연복리 1.25%, 5년초와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5%)
- **보험차이비과세**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의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 **상속/증여세** 해당 상품은 상속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별도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신 경우, 삼성생명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사이트 : www.samsunglife.com (삼성생명 홈페이지) 보험상품 비교 공시 : www.kila.or.kr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형 보험계약의 경우 해당약관을 참고바라여 이혼시 종피보험자(주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보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당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삼성생명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 또는 콜센터(1588-3114)로 연락주시던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삼성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필 2019-0463(BA, 2019-03-22)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066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생명 콜센터 : 1588-3114

삼성생명

에이스연금보험 B1.3(무배당)

연금으로
든든노후

꼬박꼬박 연금생활로 100세 시대 든든하게!

2019년
4월 개정



삼성생명 SAMSUNG

당당한 노후를 위한 준비 삼성생명 에이스연금보험!



상품특징

☑ 최소 0세부터 최대 75세까지

- 15세미만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한, 폭넓은 세대를 위한 연금보험입니다.

☑ 유병자도 가입 가능(중증재해 장애보장)

- 사망보험금은 없는 대신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장애지급률 중 80%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애가 상태가 되었을 때 보장합니다.

☑ 유연한 자금운용

-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선납, 추가납입, 연금수령 일시중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긴급자금이 필요하시거나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는 상황에는 중도인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적립형限), 잔여보험료 전액납입STOP(종료)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지나친 중도인출 및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이용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안정적인 수익 추구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적용 합니다.
(가입 후 5년 이내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5% 최저보증)

☑ 비과세 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가능합니다.

☑ 고액계약 보험료 할인혜택(적립형限)

- 기본보험료 月35만원 초과 계약은 「고액할인」 또는 「고액적립」방법으로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기유지보너스(적립형限)

- 오래 유지하고 보너스 받으세요.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보험계약일로부터 5년 경과시점, 10년 경과시점, 연금지급개시 나이(3년납에 한함) 연계약해당일)에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연금계약적립액에 가산합니다.

☑ 다양한 방식의 연금지급

-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종신형 : 종신까지 수령(최대 100세 보증)
② 상속형 : 연금을 수령하다가 해지 또는 사망시 일시지급금
③ 확정기간형 : 연계약해당일에 연금을 확정지급(최대 30년형)
※ 또한 연금지급개시시점 연금계약적립액의 일부를 원하는 시점에 내리사랑자금(일시금 또는 인출형태)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기연금수령제도

- 일정요건 해당시 연금개시신청을 최소유지기간 이내 나이로 단축 가능합니다.(적립형限)
• 확정기간형의 경우도 요건 충족시 연금개시신청이 가능합니다. (과세계약限)

☑ 장기요양연금전환특약(개인형限)

- 연금개시 후 연금과 건강 니즈를 동시 충족하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생존연금 수령 중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하면 장기요양연금을 추가로 최대 10회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 연금수익자 지정

- 가입시점에 연금선(先)수익자와 연금후(後)수익자 지정이 가능하여 연금수령권을 더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연생연금(내리사랑형 선택시)

- 가입시점에 연금수익자 2명을 지정하여 (조)부모와 (손)자녀가 세대를 이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
당신의 노후는 준비되어 있나요?

노후의 여유를 위한 더 현명한 선택,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 한국인 은퇴준비지수 |

| 노후 적정 月생활비(부부기준) |

54.5 점

출처: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2018

243 만원

출처 : 국민연금연구원, 2018

삼성생명 에이스연금보험 B1.3(무배당)

가입안내

가입나이

주피보험자	• 1종(적립형) : ① 10년납 미만 : 0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 10)세 ② 10년납 이상 : 0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 (납입기간 + 3))세 • 2종(거치형) : 0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 5)세
종피보험자	0세 이상

연금지급개시나이

※ 연금지급개시나이는 주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종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형으로 전환된 경우 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피보험자 기준	• 1종(적립형) : 45 ~ 85세 • 2종(거치형) : 45 ~ 80세
종피보험자 기준	• 1종(적립형) ① 10년납 미만 : 종피가입나이 + 10년 ~ 85세 ② 10년납 이상 : 종피가입나이 + (납입기간 + 3)년 ~ 85세 • 2종(거치형) : 종피가입나이 + 5년 ~ 80세

※ 단,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 종피보험자의 나이는 만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납입기간

1종(적립형)	3, 5, 7, 10~20년, (연금지급개시나이-3)세납
2종(거치형)	일시납

※ 단, (연금지급개시나이-3)세납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납입기간 단축가능[10년납 미만으로의 단축은 불가, 10년 초과납은 10년 이상 연단위 기간으로 단축가능합니다.(최대 20년까지)]

가입한도(기본보험료 기준)

1종 적립형	1구좌(월기본보험료 ~ 100만원) 기준 ※ 아래 가입나이는 주피보험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주피보험자 가입나이는 '85- 보험료 납입기간 - 3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년납	0 ~ 75세 : 20 ~ 100만원
	5년납	0 ~ 75세 : 10 ~ 100만원
	7년납	0 ~ 75세 : 10 ~ 100만원
	10년납 이상 - 14년납 이하	0 ~ 72세 : 10 ~ 100만원
	15년납 이상 - 20년납 이하	0 ~ 67세 : 10 ~ 100만원
2종 거치형	기본보험료 1,600만원 이상	

상품안내

추가납입 및 선납

- 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 3세」 연계약해당일까지 추가납입 가능
(1회 만원 이상, 만원단위, 승인된 정상계약 限)

- ① **적립형** · 1회 납입한도 : 「이미 납입한 월기본보험료(선납포함)의 합계X2」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
· 총 납입한도 : 「월기본보험료 X 12 X 납입기간」의 2배 이내

- ② **거치형** · 연간납입한도 / 총납입한도 : 「기본보험료의 2배」이내

- ※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금액(단, 거치형의 경우 연간추가납입한도 내만큼 추가로 납입 가능)
- ※ 추가납입보험료는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관리비용이 차감된 후 적립합니다.

- **적립형에 한하여 선납가능**

- 5년납 이상 : 6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당월분 제외)

- 3년납 : 11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당월분 제외)

- ※ 선납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 없고 선납시 납입일부터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보험료 납입해당일에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합니다.

중도인출

- 가입 1개월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연 12회,
1회당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이내에서 인출가능(최저 10만원 이상, 천원단위)

- 인출 후 기본보험료에 의한 연금계약적립액은 일정수준 유지 필요

- ① **적립형** : 1구좌당 200만원 이상 ② **거치형** : 기본보험료의 30% 이상

- 인출수수료 : 인출금액의 0.2%(최대 2,000원 限)

- ※ 단, 매년연계약해당일 기준) 최초 4회까지의 인출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10년 이내의 인출액 총 한도(인출수수료 포함)는

-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이내로 제한

- ※ 중도인출 이후 해지환급금 또는 연금액 지급시에는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및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에 부러되는 이자를 차감하므로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의
예상액보다 현저히 적어질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수령제도(적립형 限)

- 일정요건 해당시 최소유지기간 이내 나이로 단축 가능(적립형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소유지기간 이내로 연금지급개시나이 단축 가능.

- 단, 이 경우 신청일 직후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에 반드시 연금개시

- ① 가입후 3년이상 경과계약만 신청가능

- ② 보험료 납입완료

- ③ 신청일이후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의 연금계약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0% 초과

- ※ 단, ③의 경우 신청일 이후 최저보증이율이 지속될 것을 가정했을 때 100%를 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시기 : 단축하고자 하는 연금개시연도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신청

※ 본 상품은 저축성 보험이며, 은행의 연금신탁 또는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본 상품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적립형 限)

- 1회 신청당 최대 12개월 限, 최대 3회까지 가능

-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5년납, 7년납, 10년납 이상은 각각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 4년, 5년이 지난 후 신청 가능합니다. (3년납 신청불가)

- ※ 단, 잔여보험료 전액 납입STOP(종료)제도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신청시 납입기간이 일시중지된 기간만큼 연기되므로
연장된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 납입일시중지 신청시에는 계약유지를 위해 매일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

- (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위험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리비용 등이 공제됩니다.

- ※ 중도인출 또는 보험계약대출 გადა 등에 따라 계약 유지를 위한 최소보험료의 공제 불가시에는
납입일시중지 기간이 종료되며, 이 경우 계약유지를 위해서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반드시 납입하셔야 합니다.

- ※ 납입일시중지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시점이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완료 직후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나이가 연기됩니다.

- ※ 납입일시중지기간 중에는 추가납입을 포함한 모든 보험료의 납입이 불가합니다.

고액계약 보험료할인제도(적립형 限)

- 기본보험료 月35만원 초과 납입시 가입시점에
보험계약자가 「고액할인」과 「고액적립」 중 할인방법 선택 가능

- 고액할인 : 보험계약자가 기본보험료에서 할인금액만큼
차감된 금액을 보험료로 납입

- 고액적립 : 보험계약자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고,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할인금액만큼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연금계약적립액에 가산하여 적립

- 고액할인금액 또는 고액적립금액

- 3년납 35만원 < 기본보험료 : (기본보험료 - 35만원) × 0.5%

- 5년납 이상 35만원 < 기본보험료 ≤ 100만원 : (기본보험료 - 35만원) × 1.5%,
100만원 < 기본보험료 ≤ 200만원 : 9,750원 + (기본보험료 - 100만원) × 2.0%,
200만원 < 기본보험료 ≤ 300만원 : 29,750원 + (기본보험료 - 200만원) × 3.0%,
300만원 < 기본보험료 : 59,750원 + (기본보험료 - 300만원) × 2.0%

연금수익자 지정

- 계약자는 가입시점에 연금선(先)수익자, 연금후(後)수익자 지정 필요

- 연금선(先)수익자 : 연금지급개시시 우선적으로 연금수령권 가짐

- 연금후(後)수익자 : 연금개시후 연금선(先)수익자가
사망한 이후에 연금수령권을 가짐

- 연금선(先)수익자는 자신이 사망한 경우 연금수령권이 연금후(後)수익자에게
있음을 연금지급개시일 전까지 서면 동의 필요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연금선(先)수익자 또는 연금후(後)수익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연금지급개시일 전까지 연금선(先)수익자 또는
연금후(後)수익자를 다시 지정 필요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선(先)수익자 또는 연금후(後)수익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연금선(先)수익자 또는 연금후(後)수익자를
다시 지정할 수 없음

연금수령 일시중지제도

- 연금개시이후 일정기간 동안 **연금수령 일시중지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수령 일시중지 종료 신청**시 계속하여 **연금수령 가능**(연금수익자가 일시중지 신청 가능, 최대 3회 限)
- 일시중지기간 동안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은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일시중지의 종료를 신청한 이후 최초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부터 '보충지급횟수 - 1년까지'(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1년까지') 지급
- ※ 종신연금(플러스)형 또는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 연금수령 일시중지 신청시점에서 계약자와 연금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유지보너스(적립형 限)

- '계약일부터 5년, 10년 각각의 경과시점 및 연금지급개시나이(3년납에 한함)' 연계약해당일에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연금계약 적립액에 가산
- 장기유지보너스 금액 : 장기유지보너스기준금액 x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률
-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률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률	
		3년납	5년납
보험계약일부터 5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부터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까지 납입된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합계 (선납제외)	0.5%	2.5%
보험계약일부터 10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0.5%	4.0%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 (단,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이 보험계약일부터 10년 초과인 경우에 한함)		0.2% x [20년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10년) 중 짧은 기간]	-

- ※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의 장기유지보너스의 경우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 이전 보험계약일로부터 10년 초과이며, 3년납인 경우에 한하여 발생합니다.
- ※ 연금지급개시나이를 변경(단축)하는 경우 또는 개인형으로 전환되어 연금지급개시나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연금지급개시나이 및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 ※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에 생존연금이 지급개시되는 경우 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최종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적용한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사망시 지급액'에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해지시점의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은 계약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 ※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는 경우 감액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장기유지보너스를 적용합니다.

잔여보험료 전액 납입STOP(종료)제도(적립형 限)

-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의 50% 경과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계약 해당일 이후부터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가 회사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여보험료의 전액 납입 종료를 신청 가능
- 신청불가사유 : 아래의 조건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신청 불가
 - ①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를 1회 이상 신청한 경우
 - ② 잔여 보험료 전액 납입STOP(종료)제도를 신청후 취소하거나 잔여 보험료 전액 납입STOP(종료)기간이 종료된 경우
 - ③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납 미만인 경우
 - ④ 납입STOP(종료) 신청시 해지환급금이 회사에서 정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
- 잔여보험료 전액 납입STOP(종료)신청시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최소적립액(구좌당 200만원 이상)'이상이어야 함

- ※ 잔여 보험료 전액 납입STOP(종료) 기간 중에는 계약유지를 위해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 (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해당월의 위약보험료, 계약제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중 유익관리비용(납입유) 등을 공제합니다.
- ※ 중도인출, 보험계약대출을 과다 등에 따라 계약유지를 위한 최소금액 공제 불가시에는 잔여 보험료 전액 납입STOP(종료)기간은 그때부터 종료됩니다.
- ※ 잔여 보험료 전액 납입STOP(종료)을 신청시 이후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이 불가합니다. 단, 잔여 보험료 전액 납입STOP(종료)을 신청후 3년 이내에 잔여 보험료 전액 납입STOP(종료)제도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잔여 보험료 전액 납입STOP(종료)기간은 그때부터 종료됩니다.
- ※ 잔여 보험료 전액 납입STOP(종료) 신청취소 또는 종료된 이후의 최초 보험료 납입기일은 신청취소 또는 종료 후 최초로 다가오는 월계약해당일로 연기되며,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료 납입기일이 연기된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또한 연기된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최초로 다가오는 연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나이가 연기됩니다.
- ※ 잔여 보험료 전액 납입STOP(종료) 신청취소 또는 종료된 경우, 잔여 보험료 전액 납입STOP(종료)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본 상품은 자취성 보험이며, 은행의 연금신탁 또는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 본 상품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성 특약 안내

장기요양연금전환특약(무배당) ※ 개인형(피보험자 1인 선택)계약으로 가입 또는 전환한 경우 선택 가능

- 연금지급개시일의 해지환급금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특약의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생존연금 및 장기요양연금을 수령가능
- 연금지급방법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생존 연금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충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이 특약의 보험료에서 장기요양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장기 요양 연금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상태"가 되고, 장기요양연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장기요양연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단, 보험기간 중 지급하는 장기 요양연금은 10회를 최고 한도로 하여 지급	'이 특약의 보험료에서 생존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상태 발생률', '발생이후 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 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 ※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면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 요양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노인성 질환이란 치매·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함)을 말합니다.
- ※ "장기요양상태의 판정기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어 연금지급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 장기요양연금 지급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판정 받은 장기요양등급이 상이에서 정한 "장기 요양 상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장기요양연금의 지급을 중지합니다.
- ※ 앞의 사유로 인해 "장기 요양 상태"에 해당되지 않아 장기요양연금의 지급이 중지된 이후에 다시 상이에서 정한 "장기요양 상태"로 판정 받은 경우에는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남은 장기요양연금의 지급을 개시합니다.
- ※ 다음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 특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이 특약의 내용을 변경하며,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변경내역 및 특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특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통지 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 판정 기준'이 폐지되는 경우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의 변경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③ 법령의 개정에 따라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할 수 있거나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적격자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전환 당시 전환특약의 일시납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이 경우 전환 당시의 약관 및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전환일 현재 '기초율'에 따라 계산된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기초율 : 연금전환 당시 판매중인 장기요양연금전환특약(무)의 약관 (보장내용 등)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기초율'에 의한 보험요율, 연금지급률에 적용[장기간/병자발생률 및 사망률, 계약 관리비용,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등]

계약승계특약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해지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피보험자를 변경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계약승계(계약자 신청가능)
- 승계대상 :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신청시기 :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단, 납입완료이후로 한하며 거치형은 3년 이후)
- 승계방법 :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감액 후 승계

* 단,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 모두 사망시에는 '사망 당시의 연금계약 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말하며, 적립형의 경우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최종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적용한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추가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보험계약자가 주보험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
- 지정대리인은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가능
- 적용대상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보험 및 특약

연금지급예시

○ 개인형

- ※ 보험계약에 적용하는 실제이율은 공시이율이나, 본 상품안내장에서는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단, 공시이율 상한) 및 공시이율을 가정하여 생명보험 상품공시 시행세칙에 따라 예시합니다.
- ※ '평균공시이율 2.50%(2019년 기준)'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적립형

남자 40세, 월납보험료 150만원, 5년납, 60세 연금지급개시, 고액적립반영, 개인형

연금연액 기준 (단위 : 원)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2.50% 지속가정시	연복리 2.66% 지속가정시
종신연금 플러스형	10회 보증	3,108,790	5,825,080	6,129,170
	22회 보증	3,054,710	5,724,260	6,023,340
	40회 보증	2,688,670	5,207,110	5,492,260
확정기간 연금 플러스형	10년형	10,439,840	15,355,740	15,883,600
	20년형	5,350,060	8,621,020	8,978,300
	30년형	3,654,880	6,421,050	6,728,520
상속연금 플러스형	피보험자 생존시	507,920	3,359,860	3,667,390
	해지 또는 피보험자 사망시 일시지급금	102,295,090	135,335,240	138,837,060

- ※ 상기 연금지급액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장기저축보너스 포함, 이하 동일)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 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 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으로 합니다.
- ※ 연금연액은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해당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연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되는 경우 해당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연금개시전까지 종피보험자를 선택한 경우 종신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보증지급횟수 이후에 살아있을 때 '주피보험자 사망후 연금수령비용'에 따라 연금연액이 변경됩니다. '주피보험자 사망후 연금수령비용'이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보증지급횟수 이후 종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지급되는 연금연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계약체결시점에 20%, 50%, 70%, 100% 중에서 선택한 비율을 말합니다. 단, 연금지급개시시점에 변경 가능하며, 연금개시 이후 변경 불가합니다.
- ※ 상기 예시된 종신연금플러스형의 보증지급횟수는 ① 최소보증지급횟수[10회], ② 기대여명(단, 피보험자의 기대여명이 10보다 작은 경우에는 10회), ③ 최대보증지급횟수["100 - 피보험자의 연금지급개시나이(회)"]입니다.

- ※ 본 상품은 저축성 보험이며, 은행의 연금신탁 또는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 본 상품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치형

남자 40세, 일시납보험료 1억원, 60세 연금지급개시, 개인형

연금연액 기준 (단위 : 원)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2.50% 지속가정시	연복리 2.66% 지속가정시
종신연금 플러스형	10회 보증	3,239,060	6,313,710	6,675,070
	22회 보증	3,182,720	6,204,440	6,559,810
	40회 보증	2,801,340	5,643,900	5,981,430
확정기간 연금 플러스형	10년형	10,877,330	16,643,840	17,298,260
	20년형	5,574,260	9,344,180	9,777,950
	30년형	3,808,040	6,959,670	7,327,800
상속연금 플러스형	피보험자 생존시	529,200	3,641,690	3,994,020
	해지 또는 피보험자 사망시 일시지급금	106,581,860	146,687,630	151,202,540

- ※ 종신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연액을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지급합니다. 단, 이 경우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된 연금연액의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으로 하며, 이하 같습니다.)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 또는 30회)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연액을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 연금수익자는 종신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한, 종신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이후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 종신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개시 당시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지급개시 당시의 경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상기 예시된 연금지급액은 세제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험계약에 대한 과세 기준은 '보험처의 세제 관련 사항(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리사랑형

- ※ 보험계약에 적용하는 실제이율은 공시이율이나, 본 상품안내장에서는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단, 공시이율 상한) 및 공시이율을 가정하여 생명보험 상품공시 시행세칙에 따라 예시합니다.
- ※ '평균공시이율 2.50%(2019년 기준)'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적립형

주피보험자 남자 40세, 종피보험자 남자 5세, 월납보험료 150만원, 5년납, 60세 연금지급개시, 고액적립반영, 내리사랑형, 주피보험자 사망후 연금수령비율 100%

연금연액 기준 (단위 : 원)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2.50% 지속가정시	연복리 2.66% 지속가정시
종신연금 플러스형	10회 보증	주피보험자 생존시	1,668,690	4,040,370	4,317,940
		보증지급횟수 이후 종피보험자만 생존시	1,668,690	4,040,370	4,317,940
	22회 보증	주피보험자 생존시	1,668,660	4,040,260	4,317,820
		보증지급횟수 이후 종피보험자만 생존시	1,668,660	4,040,260	4,317,820
	55회 보증	주피보험자 생존시	1,660,440	4,026,180	4,303,280
		보증지급횟수 이후 종피보험자만 생존시	1,660,440	4,026,180	4,303,280
확정기간 연금 플러스형	10년형		10,439,380	15,355,160	15,883,000
	20년형		5,349,830	8,620,690	8,977,970
	30년형		3,654,720	6,420,800	6,728,270
상속연금 플러스형	주피보험자 생존시		507,890	3,359,730	3,667,250
	해지 또는 주피보험자 사망시 일시지급금		102,290,580	135,330,070	138,831,830

- ※ 상기 연금지급액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 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 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으로 합니다.
- ※ 연금연액은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 또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해당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연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되는 경우 해당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종신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보증지급횟수 이후에 살아있을 때 '주피보험자 사망후 연금수령비율'에 따라 연금연액이 변경됩니다. '주피보험자 사망후 연금수령비율'이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보증지급횟수 이후 종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지급되는 연금연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계약체결시점에 20%, 50%, 70%, 100% 중에서 선택한 비율을 말합니다. 단, 연금지급개시시점에 변경 가능하며, 연금개시 이후 변경 불가합니다.
- ※ 상기 예시된 종신연금플러스형의 보증지급횟수는 ① 최초보증지급횟수[10회]
② 기대여명(단, 주피보험자의 기대여명이 10보다 작은 경우에는 10회, ③ 최대보증지급횟수[15]단, 가입시 종피보험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100) - 주피보험자의 연금지급개시나이,회이며, '보증지급 후 종피보험자만 생존시의 연금연액,은 주피보험자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연액에 '주피보험자 사망후 연금수령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단, 보증지급횟수 직후 주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므로 주피보험자의 사망시점에 따라 예시된 연금연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본 상품은 자취식 보험이며, 은행의 연금신탁 또는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 본 상품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말합니다.
- ※ 아래에 예시된 연복리 2.50%는 평균공시이율 2.50%(2019년 기준)와 '공시이율 연복리 2.66%(2019년 3월 기준)'중 작은 이율을 적용한 이율입니다.
- ※ 아래에 예시된 연복리 2.66%는 2019년 3월 기준 공시이율이며, 매월 변동할 수 있습니다.

거치형

주피보험자 남자 40세, 종피보험자 남자 5세, 일시납보험료 1억원, 60세 연금지급개시, 내리사랑형, 주피보험자 사망후 연금수령비율 100%

연금연액 기준 (단위 : 원)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2.50% 지속가정시	연복리 2.66% 지속가정시
종신연금 플러스형	10회 보증	주피보험자 생존시	1,738,620	4,379,290	4,702,530
		보증지급횟수 이후 종피보험자만 생존시	1,738,620	4,379,290	4,702,530
	22회 보증	주피보험자 생존시	1,738,580	4,379,170	4,702,390
		보증지급횟수 이후 종피보험자만 생존시	1,738,580	4,379,170	4,702,390
	55회 보증	주피보험자 생존시	1,730,020	4,363,920	4,686,550
		보증지급횟수 이후 종피보험자만 생존시	1,730,020	4,363,920	4,686,550
확정기간 연금 플러스형	10년형		10,876,850	16,643,210	17,297,630
	20년형		5,574,010	9,343,830	9,777,600
	30년형		3,807,870	6,959,410	7,327,530
상속연금 플러스형	주피보험자 생존시		529,180	3,641,560	3,993,880
	해지 또는 주피보험자 사망시 일시지급금		106,577,080	146,682,140	151,196,980

- ※ 종신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되지 전에 피보험자가 모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연액을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단, 이 경우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된 연금연액의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으로 하며, 이하 같습니다.) 동안에 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 또는 30회)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연액을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 연금수익자는 종신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산지급 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단, 종신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이후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 종신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개시 당시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지급개시 당시의 경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상기 예시된 연금지급액은 세제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험계약에 대한 과세 기준은 '보험차익 세제' 관련 사항(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 ※ 보험계약에 적용하는 실제이율은 공시이율이나, 본 상품안내장에서는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단, 공시이율 상한) 및 공시이율을 가정하여 생명보험 상품공시 시행세칙에 따라 예시합니다.
- ※ '평균공시이율 2.50%(2019년 기준)'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 개인형

[적립형] 피보험자 남자 40세, 월납보험료 150만원, 5년납,

60세 연금지급개시, 고액적립반영, 개인형

(단위 : 만원, %)

기간	최저보증이율 기준			연복리 2.50% 지속가정시		연복리 2.66% 지속가정시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800	1,665	92.5	1,677	93.1	1,678	93.2
3년	5,400	5,209	96.4	5,310	98.3	5,323	98.5
5년	9,000	9,066	100.7	9,351	103.9	9,388	104.3
7년	9,000	9,234	102.6	9,810	109.0	9,879	109.7
10년	9,000	9,852	109.4	10,901	121.1	11,026	122.5
15년	9,000	10,063	111.8	12,295	136.6	12,534	139.2
20년	9,000	10,280	114.2	13,871	154.1	14,253	158.3

○ 내리사랑형

[적립형] 주피보험자 남자 40세, 종피보험자 남자 5세, 월납보험료 150만원, 5년납,

60세 연금지급개시, 고액적립반영, 내리사랑형

(단위 : 만원, %)

기간	최저보증이율 기준			연복리 2.50% 지속가정시		연복리 2.66% 지속가정시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800	1,665	92.5	1,677	93.1	1,678	93.2
3년	5,400	5,209	96.4	5,310	98.3	5,323	98.5
5년	9,000	9,066	100.7	9,351	103.9	9,388	104.3
7년	9,000	9,234	102.6	9,810	109.0	9,879	109.7
10년	9,000	9,851	109.4	10,901	121.1	11,026	122.5
15년	9,000	10,063	111.8	12,294	136.6	12,533	139.2
20년	9,000	10,280	114.2	13,871	154.1	14,252	158.3

- ※ 예시된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은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가 모두 생존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의 생존여부에 따라 보장 대상자가 변경되어 해지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예시된 금액은 연계약해당일 전일 기준의 해지환급금에 장기유지보너스가 발생하는 해경년도지의 장기유지 보너스 해당금액(계약해당일 기준)을 포함한 금액이며, 연계약해당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해지시 예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차감된 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보유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해지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 상기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상기 예시된 각각의 이율이 경과기간동안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에 따라 산출하였으며, 실제로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상기 예시된 이율과 다르거나 변동하면 실제 해지환급금은 예시금액과 상이합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일이 매월 월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또는 추가납입, 중도인출 선택 시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납입원리사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 상기 환급률은 경과기간별로 각 시점에서의 해지환급금을 그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로 나누어서 산출된 비율입니다.
- ※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으며,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 본 상품은 자축성 보험이며, 은행의 연금신탁 또는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 본 상품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말합니다.

- ※ 아래에 예시된 연복리 2.50%는 평균공시이율 2.50%(2019년 기준)와 '공시이율 연복리 2.66%(2019년 3월 기준)'중 작은 이율을 적용한 이율입니다.
- ※ 아래에 예시된 연복리 2.66%는 2019년 3월 기준 공시이율이며, 매월 변동할 수 있습니다.

[거치형] 피보험자 남자 40세, 일시납보험료 1억원,

60세 연금지급개시, 개인형

(단위 : 만원, %)

기간	최저보증이율 기준				연복리 2.50% 지속가정시				연복리 2.66% 지속가정시			
	연금계약 적립액	적립률	해지 환급금	환급률	연금계약 적립액	적립률	해지 환급금	환급률	연금계약 적립액	적립률	해지 환급금	환급률
1년	9,835	98.3	9,651	96.5	9,957	99.5	9,772	97.7	9,973	99.7	9,788	97.8
3년	9,935	99.3	9,842	98.4	10,311	103.1	10,219	102.1	10,360	103.6	10,268	102.6
5년	10,037	100.3	10,037	100.3	10,684	106.8	10,684	106.8	10,769	107.6	10,769	107.6
7년	10,190	101.9	10,190	101.9	11,175	111.7	11,175	111.7	11,300	113.0	11,300	113.0
10년	10,425	104.2	10,425	104.2	11,959	119.5	11,959	119.5	12,150	121.5	12,150	121.5
15년	10,566	105.6	10,566	105.6	13,402	134.0	13,402	134.0	13,726	137.2	13,726	137.2
20년	10,711	107.1	10,711	107.1	15,035	150.3	15,035	150.3	15,522	155.2	15,522	155.2

[거치형] 주피보험자 남자 40세, 종피보험자 남자 5세, 일시납보험료 1억원,

60세 연금지급개시, 내리사랑형

(단위 : 만원, %)

기간	최저보증이율 기준				연복리 2.50% 지속가정시				연복리 2.66% 지속가정시			
	연금계약 적립액	적립률	해지 환급금	환급률	연금계약 적립액	적립률	해지 환급금	환급률	연금계약 적립액	적립률	해지 환급금	환급률
1년	9,835	98.3	9,651	96.5	9,957	99.5	9,772	97.7	9,973	99.7	9,788	97.8
3년	9,935	99.3	9,842	98.4	10,311	103.1	10,219	102.1	10,360	103.6	10,268	102.6
5년	10,037	100.3	10,037	100.3	10,683	106.8	10,683	106.8	10,769	107.6	10,769	107.6
7년	10,190	101.9	10,190	101.9	11,175	111.7	11,175	111.7	11,300	113.0	11,300	113.0
10년	10,425	104.2	10,425	104.2	11,959	119.5	11,959	119.5	12,150	121.5	12,150	121.5
15년	10,566	105.6	10,566	105.6	13,402	134.0	13,402	134.0	13,725	137.2	13,725	137.2
20년	10,710	107.1	10,710	107.1	15,034	150.3	15,034	150.3	15,521	155.2	15,521	155.2

- ※ 연금계약적립액만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 ※ 납입보험료에서 사입비를 차감한 뒤 복리부리됩니다.
- ※ **해지환급금은 연금계약적립액에서 해지시 발생하는 해지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가입 후 5년 경과시점부터는 연금계약적립액과 동일합니다.**
-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세제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험계약에 대한 과세 기준은 '보험차익 세제 관련 사항(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전 1년 공시이율 변동내역

경과월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8.10	'18.11	'18.12	'19.1	'19.2	'19.3
공시이율	2.60%	2.60%	2.60%	2.60%	2.64%	2.67%	2.67%	2.65%	2.65%	2.64%	2.64%	2.63%	2.66%

- ※ 공시이율 변동(가입 후 5년 이내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5% 최저보증)에 따라 연금지급액 및 해지환급금이 변동합니다.

장기요양연금전환시 연금지급액 예시(개인형 限)

※ 최저보증아율은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말하며, 아래 최저보증아율 가정시 예시된 연금지급액은 연금지급개시시점에 적용받는 최저보증아율이 계속됨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아래에 예시된 연복리 2.66%는 2019년 3월 기준 공시이율이며, 매월 변동할 수 있습니다.

○ **적립형** 남자 40세, 월납보험료 150만원, 5년납, 60세 연금지급개시, 고액적립반영, 개인형

(단위 : 원)	최저보증아율 지속가정시 (연금전환보험료 102,806,570원)		연복리 2.66% 지속가정시 (연금전환보험료 142,530,130원)		
	연금연액 기준	생존연금	장기요양연금	생존연금	장기요양연금
10회 보증		3,025,450	3,025,450	6,001,020	6,001,020
22회 보증		2,974,210	2,974,210	5,899,530	5,899,530
40회 보증		2,626,110	2,626,110	5,389,130	5,389,130

○ **거치형** 남자 40세, 일납보험료 1억원, 60세 연금지급개시, 개인형

(단위 : 원)	최저보증아율 지속가정시 (연금전환보험료 107,114,770원)		연복리 2.66% 지속가정시 (연금전환보험료 155,224,520원)		
	연금연액 기준	생존연금	장기요양연금	생존연금	장기요양연금
10회 보증		3,152,230	3,152,230	6,535,500	6,535,500
22회 보증		3,098,840	3,098,840	6,424,970	6,424,970
40회 보증		2,736,160	2,736,160	5,869,120	5,869,120

※ 상기 예시된 연금지급액 및 연금전환조건은 현재 당사가 판매중인 장기요양연금전환특약(무배당)의 기초율(장기간병자발생률 및 사망률 등) 및 예시된 이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및 전환조건입니다.

항후 실제 장기요양연금전환시에는 전환 당시 판매중인 장기요양연금전환특약의 기초서류의 내용을 적용하기 때문에 약관과 보험요율이 현재 안내되는 내용[선택가능한 연금지급형태, 기초율 및 공시이율(최저보증아율 포함)]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 연금지급액 계산 당시의 공시이율이 변동될 경우 생존연금 및 장기요양연금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이 연금전환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계약적립액에서 연금전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은 후보험의 연금지급형태 중 한가지로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연금전환시점에 계약자는 최소보증지급횟수부터 최대보증지급횟수까지 중 보증지급횟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생존연금의 보증지급횟수는

- ① 최소보증지급횟수 [0(단, 피보험자의 기대여명이 10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대여명)회],
- ② 기대여명회수, ③ 최대보증지급횟수(100에서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차감한 횟수)입니다.

※ 상기 예시된 연금지급액은 세제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험계약에 대한 과세 기준은 '보험차익세제 관련 사항(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저축성 보험이며, 은행의 연금신탁 또는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본 상품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 개인형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개인형으로의 가입 및 전환]에 따라 개인형 계약으로 가입 또는 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주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형 계약으로 가입 또는 전환
 - 계약을 체결할 때 종피보험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 주피보험자가 살아 있고 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사망이외의 원인으로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② 종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개인형으로 전환
 - 종피보험자가 살아 있고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내용	
		1종 적립형 (1구좌 기준)	2종 거치형
증증재해 장해보험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80%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기본보험료 × 20% × 해당 장해지급률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망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지급하며 계약은 소멸합니다. 단, 연금계약적립액은 「계약소멸사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금액 제외)」를 최초로 합니다.

※ 적립형의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한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상기에서 정한 금액에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 개인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개인형으로의 가입 및 전환]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시점에 개인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단, 종신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에 한함) 중 주피보험자는 살아 있고 종피보험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종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종신연금플러스형,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 상속연금플러스형으로 변경하여 선택가능)

연금지급형태	지급사유	지급내용
종신 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충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종신연금 플러스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충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1-내리사랑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내리사랑자금 지급기간 내에 내리사랑자금의 인출 신청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내리사랑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내리사랑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확정기간 연금 플러스형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의 매년 연계약 해당일에 확정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1-내리사랑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내리사랑자금 지급기간 내에 내리사랑자금의 인출 신청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내리사랑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내리사랑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상속연금 플러스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지급	· 1차년도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1-내리사랑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한 1년 후의 이자액을 연금지급개시 시점으로 할인한 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 단, 1년 후의 이자액」 및 「할인한 금액은」 연금 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 2차년도 이후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 계약 적립액에 (1-내리사랑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1차년도 연금연액(계약관리 비용 포함)을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직전 1년간의 이자상당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내리사랑자금 지급기간 내에 내리사랑자금의 인출 신청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내리사랑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내리사랑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 18, 20페이지의 내용에 대한 각주는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자축성 보험이며, 은행의 연금신탁 또는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본 상품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리사랑형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내리사랑형으로의 가입]에 따라 내리사랑형 계약으로 가입 또는 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급부형	지급사유	지급내용	
		1종 적립형 (1구좌 기준)	2종 거치형
중증재해 장해보험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80%이상 100%이하여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기본보험료 × 20% × 해당 장해지급률

- ※ 종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주피보험자와 실질적 부양관계에 있는 자 포함) 중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선택한 1명 (단, 계약 체결시점에서 0세 이상으로 합니다. 계약체결 후 종피보험자가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주피보험자와 실질적 부양관계에 있는 자 포함)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더 이상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단, 종피보험자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자가 종피보험자의 자각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종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 당시의 연금계약 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금액 제외), 중 큰 금액(이하, 「사망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연금계약적립액이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비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일부터 일지계산에 의하여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월계약해당일 또는 납입일부터 일지계산에 의하여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에서 중도인출금 및 인출수수료를 차감합니다.
- ※ 적립형의 경우 납입일시종지기간 중에는 계약유지를 위해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리 비용을 차감하며, 잔여 보험료 잔액 납입STOP(종료)기간 중에는 계약유지를 위해 해당월의 위험 보험료, 기본보험료의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리비용(납입후)을 공제합니다.
- ※ 적립형의 경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한 장기유지보너스준비금을 「사망시 지급액,에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종피보험자가 먼저 사망하여 약관 「종피보험자의 중도가입(또는 변경) 특칙」에 따라 종피보험자를 변경한 경우 상기 보험금 지급사유의 종피보험자는 변경된 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 모두 사망시 계약은 소멸합니다.
- ※ 장해지급률의 판정기준은 약관에서 정한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내리사랑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개시시점에 [내리사랑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보험가입시점에
정해진 종신연금형으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연금지급형태	지급사유	지급내용
종신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단, 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보충지급횟수까지의 전여분은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범사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보충지급횟수 이후에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주피보험자 생존시 지급될 연금연액에 "주피보험자 사망후 연금수령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방범사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내리사랑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아래의 연금지급형태로 변경하여 선택 가능합니다.

연금지급형태	지급사유	지급내용
종신연금 플러스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단, 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보충지급횟수까지의 전여분은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1-내리사랑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범사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보충지급횟수 이후에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주피보험자 생존시 지급될 연금연액에 "주피보험자 사망후 연금수령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방범사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확정기간 연금 플러스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내리사랑자금 지급기간 내에 내리사랑자금의 인출 신청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내리사랑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범사에 따라 계산한 내리사랑자금의 범위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의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1-내리사랑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범사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상속연금 플러스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내리사랑자금 지급기간 내에 내리사랑자금의 인출 신청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내리사랑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범사에 따라 계산한 내리사랑자금의 범위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지급	· 1차년도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1-내리사랑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한 1년 후의 이자액을 연금지급개시 시점으로 할인한 금액,을 산출방범사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 단, "1년후의 이자액" 및 "할인한 금액"은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 2차년도 이후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 계약 적립액에 (1-내리사랑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1차년도 연금연액(계약관리 비용 포함)을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범사에 따라 계산한 직전 1년간의 이자상당액
상속연금 플러스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내리사랑자금 지급기간 내에 내리사랑자금의 인출 신청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내리사랑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범사에 따라 계산한 내리사랑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 18, 20페이지의 내용에 대한 각주는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저축성 보험이며, 은행의 연금신탁 또는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본 상품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20페이지 보장내용(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 대한 각주 내용]

- ※ 연금계약적립액이란 산출방범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월계약해당일 또는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에서 중도인출금 및 인출수수료를 차감합니다.
- ※ 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 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연금계약 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으로 합니다.
- ※ 연금연액은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해당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연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되는 경우 해당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종신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보충지급횟수 이후에 살아있을 때 '주피보험자 사망후 연금수령비용'에 따라 연금연액이 변경됩니다. 주피보험자 사망후 연금수령비용이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보충지급횟수 이후 종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지급되는 연금연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계약체결시점에 20%, 50%, 70%, 100% 중에서 선택한 비율을 말합니다.(연금지급개시시점에 변경 가능합니다.)
- ※ "공시이율(가입 후 5년 이내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5% 최저보증)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일 마지막 날까지 개월단 확정 적용합니다.
- ※ 보충지급횟수는 최소보충지급횟수(10)부터 최대보충지급횟수까지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대보충지급횟수"란 "15 - 주피보험자의 연금지급개시나이,회를 말합니다. 단, 개인형의 경우에는 "100 - 피보험자의 연금지급개시나이,회를 말합니다.
- ※ 종신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보충지급횟수까지 지급되지 전에 피보험자가 모두 사망(단, 개인형으로 전환된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충지급횟수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연액을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지급합니다. 단, 이 경우 보충지급횟수까지 지급된 연금연액의 총합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으로 하며, 이하 같습니다) 동안에 피보험자가 모두 사망(단, 개인형으로 전환된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 또는 30회)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연액을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 연금수익자는 종신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보충지급횟수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산출방범사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한 일시금으로 전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 상기에도 불구하고 종신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을 보충지급횟수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의 '일부기간(전지급(연단위) 또는 일정비율(전지급(10% 단위)을 선택한 경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생존연금을 산출방범사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전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기간 전지급과 일정비율전지급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일정비율전지급을 여러번 선택할 경우 해당 선택비율의 합계를 최대 50%로 합니다.
- ※ 연금연액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나누어 산출방범사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내리사랑자금은 산출방범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에 내리사랑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리비용(납입후)"과 연금수익자가 이미 인출한 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하고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내리사랑자금선택비율이 0%인 경우 내리사랑자금은 지급되지 아니 하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범사에 따라 연금연액이 산출됩니다.
- ※ 내리사랑자금의 인출 신청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연금수익자가 할 수 있으며, 내리사랑자금선택비율이란 내리사랑자금의 수령을 위해 계약자가 연금지급개시시점에 0~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선택한 비율을 말합니다.
- ※ 연금수익자는 내리사랑자금 지급기간동안 보험연도 기준 연2회에 한하여 내리사랑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매년(보험연도 기준) 최초 4회까지의 인출 및 내리사랑자금 잔액 일시 인출시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 '내리사랑자금 지급기간'이란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 및 상속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종신연금 플러스형의 경우 보충지급횟수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 상기에도 불구하고, 내리사랑자금의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내리사랑자금 지급기간의 종료일에 전여 내리사랑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단, 내리사랑자금의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에 전여 내리사랑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 ※ 계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단, 종신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이후 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한금을 지급합니다.
- ※ 종신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개시 당시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경험 연금사망률 및 연금 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개인형으로의 가입 및 전환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① 주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형으로 가입
 - : 계약을 체결할 때 종피보험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 ② 주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형으로 전환
 - : 주피보험자는 살아 있고 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사망 이외의 원인(부모의 이혼 등)으로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 단, 「종피보험자의 변경」에 따라 종피보험자 변경시에 주피보험자의 개인형으로 전환하지 않고, “주피보험자 및 변경후 종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계약 유지가 가능합니다.
 - ③ 종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형으로 전환
 - : 종피보험자가 살아 있고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① 주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형으로 전환(종신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에 한함)
 - : 주피보험자가 살아 있고 종피보험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부모의 이혼 등)으로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 이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계약직업액 차액을 정산하고 전환시점부터 개인형으로 전환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내리사랑형으로의 가입(종피보험자 범위 및 종피보험자 변경)

- 종피보험자의 범위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주피보험자와 실질적 부양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계약체결시점 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선택한 1인으로 하며, 계약 체결시점에서 0세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종피보험자 선택 가능

 - ※ 보험기간 중 종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사망 이외의 원인(부모의 이혼 등)으로 앞에서 정한 종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단,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도 종피보험자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종피보험자의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단, 자격을 상실한 종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필요)
 -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한하여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아래 「종피보험자의 변경」에 따라 종피보험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 종피보험자의 변경
 -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살아 있고, 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살아 있고, 종피보험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종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종피보험자 변경 가능(1회 限)
 - ※ 단, 종피보험자 변경을 위해서는 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피보험자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새로운 종피보험자의 동의 및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종피보험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 종피보험자의 변경 또는 자격유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형으로 전환됩니다.
 - ② 새로운 종피보험자도 상기 종피보험자의 요건을 만족하는 1인으로 함
 - ③ 변경전/후 종피보험자의 보장 기간
 - 변경 후 종피보험자의 보장 개시일 : 종피보험자 변경신청일부터 변경 후 종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장개시
 - 변경 전 종피보험자의 보장 종료일 : 변경 전 종피보험자의 사망일 또는 자격상실일부터 보장없음

○ 종피보험자 연금 재(再)설계의 경우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상속연금플러스형에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지급개시나이 또는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하여 종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연금을 재(再)설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

연금지급형태	지급사유	지급내용
확정기간 연금 플러스형	재(再)설계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재(再)설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의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재(再)설계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직입액에 (1-내리사랑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재(再)설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내리사랑자금 지급기간 내에 내리사랑자금의 인출 신청시	「재(再)설계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직입액에 내리사랑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내리사랑자금의 범위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상속연금 플러스형	재(再)설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직입액을 지급	· 1차년도 : 「재(再)설계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직입액에 (1-내리사랑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한 1년 후의 이자액을 재(再)설계 연금지급개시시점으로 할인한 금액」을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 단, 1년 후의 이자액 및 할인한 금액은 「재(再)설계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 2차년도 이후 : 「재(再)설계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직입액에서 1차년도 연금연액(계약관리비용 포함)을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직전 1년간의 이자상당액
	재(再)설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내리사랑자금 지급기간 내에 내리사랑자금의 인출 신청시	재(再)설계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직입액에 내리사랑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내리사랑자금 범위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 ※ 「재(再)설계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직입액,이란 주피보험자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직입액을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거치형의 경우 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하고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연금수익자의 연금지급개시시점에 기존 연금의 내리사랑자금의 잔여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 ※ 내리사랑자금선택비율이란 연금수익자가 재(再)설계 연금의 연금지급개시를 신청할 때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선택한 내리사랑자금선택비율을 말합니다.
- ※ 연금수익자가 연금지급형태 또는 연금지급개시나이를 변경하여 연금을 재(再)설계하는 경우 거치기간동안은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거치기간 중 남아있는 내리사랑자금의 인출은 가능하며, 재(再)설계연금의 연금지급개시시점에서 남아 있는 내리사랑자금을 포함한 연금계약 직입액으로 재(再)설계연금을 지급합니다.
- ※ 연금연액은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 재(再)설계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재(再)설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재(再)설계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해당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연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재(再)설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번이라도 변경되는 경우 해당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재(再)설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해당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내리사랑자금 지급기간동안 보험연도 기준 年 12회에 한하여 내리사랑자금의 일부 인출이 가능하며 인출금액은 연금수익자에게 지급되어 드립니다. 이 경우 「인출금관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수수료를 부가할 수 있습니다. 단, 매년(보험연도 기준) 최초 4회까지의 인출 및 내리사랑자금 잔액 일시 인출시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 「내리사랑자금 지급기간」이란 재(再)설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을 말합니다. 단, 내리사랑 자금지급기간이 종료된 시점까지 내리사랑자금의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내리사랑자금 지급기간의 종료일에 잔여 내리사랑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또한, 내리사랑자금의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 종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에 잔여 내리사랑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